

질의회신

박영모
지방세 운영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예기간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질의내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절차로 인하여 토지 취득 후 착공시까지 1년이 경과할 경우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범위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질의회신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음 각호 중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5호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 등을 넘긴 내부적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대판 '02두8398, '02.12.6 참조)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대판 '00두1782, '01.12.28 참조)

다. 이 건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 준정부기관으로 해당 토지 취득 당시에는 주택건설을 위해 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여부 및 인천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제5활주로 건립계획 고시로서 건설될 활주로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음(국토부 고시 2009-416, '09.6.30호)) 등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볼 수 있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 범위는 구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에서 시장이 경관 형성에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 토지를 취득당시에는 경관심의 대상임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영종하늘도시(인천영종지구 A4, A6블록) 건축물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제5활주로 건립계획(국토부 고시(2009-416, '09.6.30호))의 위치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경관심의를 위하여 소요된 기간 및 제5활주로 건립계획 고시일부터 제5활주로의 위치가 영종하늘도시(인천영종지구A4, A6블록)과 무관하다고 확인된 기간까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331, 2010. 4. 2.】

2. 특별법개정으로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납세의무

Q 질의내용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2009.1.1. 설립된 공단(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행하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취득세를 납부한 부동산 등을 승계받은 공단에게 지방세법상 취득·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특별법 개정으로 부동산을 포괄승계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 관련 질의는 우리 부지방세운영과-357(2009.1.23.)호와 유사한 사안이므로 동 질의회신을 참고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57(2009.1.23.)호 질의회신 내용

가.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세에 대하여는 동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각각 설립하고, 종전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각각 폐지하도록 하면서(제38조 및 제39조 등),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기술진흥원”)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기술진흥원(“평가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부칙 제5조, 기술진흥원 및 평가관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직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



질의회신

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승계(부칙 제4조 제3항 제2호)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 신설법인이 승계 받는 부동산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 의제규정을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명의를 재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기술진흥원과 평가관리원의 명의로 본다고 하고 있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법인이 행한 행위는 개편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술진흥원 또는 평가관리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고 하고 있는 점을 보면, 폐지된 법인과 신설법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들 법인이 포괄승계 받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새로운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라. 귀문과 같이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조직 통·폐합을 위한 법령개정으로 한국기술거래소 등 4개 기관을 폐지하고 이들 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신설함에 따라 신설법인이 포괄승계 받는 부동산 등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및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등 규정에 따라 등기명령인 표시변경등기가 이행되는 경우라면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373, 2010. 4. 5.】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시 취득세 비과세 여부

Q 질의내용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A법인과 B법인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한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유권 분할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에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명의신

탁약정"이라 함은 ...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고 하면서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하는 등기"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소유권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유자들의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 한 것으로서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참조)이며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7.4.13. 선고 2005다55930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경우로서 판결·화해권고 등에 따른 명의신탁 해지방식의 지분이전이 아닌 공유자 합의에 의한 공유권 분할형식의 지분이전이라면, 당초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 따른 공유권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372, 2010. 4. 5.】

4. 저속 전기차 취·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여부



질의내용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가 「지방세법」 제268조의2에 따른 경형자동차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에 의한 기타자동차로서 자동차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비영업용 저속전기자동차

- 길이(2.655미터), 너비(1.440미터), 높이(1.540미터), 사용연료(전기), 전동기정격출력(7kW), 승용자동차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8조의2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22조의2제1항에서 법 제2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100,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경형승용자동차라 함은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만,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상 경형승용자동차 구분은 배기량 1000cc미만을 기본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으므로 배기량이 0cc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세부적인 운영규정인 「자동차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28호, '09.12.31)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전동기정격출력이 7kW를 배기량으로 환산할 경우 배기량이 약 360cc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자동차는 경차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아울러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2호에서 같은 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에서 제1호의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콜을 이용하는 자동차는 기타자동차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 기타자동차로 분류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운영과-1424, 2010. 4. 7.】

5.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 대도시 전입관련 중과 대상여부

Q 질의내용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이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법인 등기 등록세가 중과 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는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4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 등록세 부과세 대상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법인설립과 합병등기에 대하여만 부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질의회신

인(사회복지법인)의 전입 등기 등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이 되며,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대도시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의 법인 주사무소 전입에 따른 등기(전입 후 5년 이내에 출자액 증가 포함)에 대하여는 세율적용에 있어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법인설립 일반세율의 3배를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세 비과세 규정에서는 법인이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하는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법인 설립 등기 3배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라. 아울러 조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사립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법인 등기 등록세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법인설립 일반세율에 3배를 중과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432, 2010. 4. 8.】

6. 단체소유 토지의 분리과세 여부

Q 질의내용

00클럽 소유의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00클럽이 1970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현황이 농지, 공부상 지목은 전(田), 제3자에 임대하여 관상수 재배지로 사용되고 있음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요건으로 농지의 사용현황뿐만 아니라 개인·농업법인·농어촌공사·사회복지사업자·종중 등 소유주체도 제한하고 있는 바,

다. 00클럽은 구성원의 회비로 운영되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 및 임원단을 두고 있고, 내부의 동산 관리위원회가 재산을 관리·운영 및 수익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 소유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447, 2010. 4. 9.】

7. 택지개발예정지구내 농지의 분리과세 여부

Q 질의내용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되었으나 용도지역이 세분화 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 여부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00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07.3.28)
-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08.12.24)
- 예정지구 지정 전에는 “계획관리지역”이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수용이 개시되지 않았으며, 토지 이용현황 또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전과 같은 원형지 상태임



질의회신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 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관련규정에서 기존 비도시지역내 농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지역내 녹지지역이 주거·상업·녹지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그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단순히 도시지역내 농지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이 세분화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농지라야 합니다.

라.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6조제1항), 실시계획승인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의제하고 있는 점(택지개발촉진법제6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이 도시지역으로 의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42조제1항4호)되어 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한 점,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축제한·건폐율·용적율 적용시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79조) 등을 종합할 때,

마.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현황이 농지인 쟁점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되었으나, 실시계획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세분화되지 아니하였다면

분리과세 적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1448, 2010. 4. 9.】

8. 농업회사법인 감면세액 추징여부

Q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에 의하여 취득·등록세 감면받고 사용하고 있으나,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회사법인으로 법인형태가 변경된 경우 감면된 취득·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6조제7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부대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농업이외의 목적사업을 수행 할 수 있고, 농업인 등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데 별도 제한이 없는 일반회사법인과는 설립의 목적, 출자한도,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등에서 구별되고,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라.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토목, 주택, 건축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회사법인 형태로 변경된 경우라면 감면대상법인인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사용 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감면추징 유예기간내에 농업회사법인에서 일반회사법인의 형태로 변경된 경우 해당 법인이 감면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감면대상 용도인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회사법인이 감면추징유예 기간내에 감면대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정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483, 2010. 4. 12.】

9. 선박임가공업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Q 질의내용

국세청은 '07.4.1. 민원 법인의 신청에 따라 선박임가공업을 서비스업(업태, 749603)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하였고, 국세청이 발간한 “200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도 선박임가공업을 서비스업종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를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제조업(서면1팀-1050, 2005.9.6외 다수)”과 감면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법인-46012-760, 2000.3.23외 소수)”으로 다르게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 “선박임가공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별도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박가공업체의 사실상 운영현황에 따라 공장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체 및 협력업체인 경우는 제조업으로,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인 경우는 서비스업인 인력공급업으로 각각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06, 2010. 4. 13.】

10. 대체취득 비과세 및 농어촌특별세 환부 여부

Q 질의내용 1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한 후, 수용인 각자가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을 대신한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각 조합원이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Q 질의내용 2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4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이 없어 연



질의회신

부금지급일에 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1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된 자 명의로 보상금을 수령한 후, 각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수용자된 자와 대체취득한 자 간의 명의를 달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대체취득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A 회신내용 2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난 '10.2.18일 대통령령 제22033호로 개정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과세대상이던 「지방세법」 제274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을 새로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일(2.18)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연부취득은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최종 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례 참조)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귀문과 같이 연부취득으로 개정전 법률에 따라 연부금 지급일에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최종 연부금을 사실상 완납하여 납세의무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여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환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05, 2010. 4. 13.】

11.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주민세 납세의무

Q 질의내용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73조제1항에는 균등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군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소를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군내 주소로 두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나. 금년부터 지방세제 개편에 따라 양도소득 등에 과세되는 소득분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되어 세목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지방세법 제176조의9제1항의 규정에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 소득세법에 의거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라 함)과 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라 함)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따라서, 지방세법 제176조의8제3호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구 주민세)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라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27, 2010. 4. 15.】

12. 상속 취득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Q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영 제8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12-1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69, 2010. 4. 19.】

13. 감면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규정 적용여부

Q 질의내용

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2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을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에서 15년간 100%로 변경하였는 바,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라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2010.1.1. 이후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부산광역시는 2009.12.30일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2009.12.30, 조례 제44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1호의 취득세 등의 감면(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규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단서생략)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라고 변경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2010.1.1을 시행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 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조례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인 바, 귀문과 같이 2002.12.1 사업개시하여 개정전 감면조례에 따른 취·등록세의 감면을 적용 받았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라도 변경된 개정조례 시행일(2010.1.1)에 당초 감면기한이 종료되지 아니하였다면, 2010.1.1. 이후부터는 위 변경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70, 2010. 4. 19.】

14. 지방의료원 장례식장 등록세 등 감면여부

Q 질의내용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남원의료원이 병원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전북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의 규정에 따라 취·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

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법인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건축법시행령(2009.8.5, 대통령령 제21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의4 및 부칙 제4조에서 의료시설에 설치된 장례식장은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의료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서 의료기관이 의료업무 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을 부대사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이라는 당초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장례식장이 비록 의료기관의 부수시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사업은 의료기관의 의료업무 외에 부대사업 일 뿐, 「전라북도세감면조례」 제5조의1의 규정에 따라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68, 2010. 4. 19.】

15. 대도시내 법인 합병 법인등기 등록세 중과 여부

Q 질의내용

대도시내 설립한지 5년이내 중과업종 법인이 대도시내 설립한지 5년이내 중과제외 업종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증자 등기 한 경우 중과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14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2조제8항에서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 사업년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합병법인의 신주발행 증자등기가 피합병법인이 운영하던 중과배제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 업종에 대하여만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대판2003두7293, '04.9.24 참조) 대도시내에서 설립된지 5년이내의 법인이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을 증가하여 중과제외업종을 양수한 경우 자본증자 등기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행심2007-307, '04.10.27 참조) 해당 합병법인은 중과제외 업종인 소프트웨어사업을 겸업하기 위하여 신주발행 증자하여 피합병법인을 포괄적으로 흡수합병 하는 경우라면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포함된 신주로 발행한 증자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아울러 증자 등기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제외 범위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신주발행 증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병 후 증자등기 당시 당해 법인이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라면 증자등기 당시 당해사업연도 중과업종 법인의 총매출액과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의 합에서 중과제외업종 법인의 총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만을 중과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565, 2010. 4. 19.】

16. 증축 및 대수선 공사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

Q 질의내용

기존건축물에 증축공사와 대수선 공사를 함께한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을 총 공사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 사실관계 ||

- (증축현황) 사용승인 2008.10.16
 - 기존 건축물 현황 : 지하2층/지상8층(7,153.57㎡)
 - 증축후 건축물 현황 : 지하2층/지상10층(9,168.21㎡)
 - 증축면적 : 2014.64㎡(옥탑 19.14제외)
- (대수선현황)
 - 건축물 전면부의 외부형태를 콘크리트벽 및 창 형태에서 유리벽으로 변경(미관지구 임)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에서 소유권의 보존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을 적용하고, 제4항에서 제1항 제8호중 건축물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로 보고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

나. 귀문과 같이 건축물을 증축 및 대수선 공사를 병행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증가가 없는 대수선에 따른 공사비에 대하여는 간주 취득세만 과세되고 소유권보존에 따른 등록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증축 및 대수선에 따른 총공사비 중 증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만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증축과 대수선공사 비용의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증축 또는 대수선가액(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과세권자가 관계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656, 2010. 4. 22.】

17. 주택재건축조합 비조합원용 토지 납세의무

Q 질의내용

주택재건축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중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조합이 금전신탁 받아 취득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고시 시점에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적 산정방법

|| 사실관계 ||

- 2002.12. 6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 토지신탁(46,256㎡)
- 2005.12.13. : 재건축조합이 금전신탁으로 토지취득(1,308㎡)
 - 2009. 9.30. : 아파트 준공
 - 조합원용 965세대, 일반분양분 214세대
- 2010.2. 28. : 소유권이전고시
 - 조합원분 대지면적 : 35,364㎡, 일반분양분 대지면적 : 12,200㎡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0조에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비과세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조합 등이 금전신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신탁받은 경우와 달리 조합에 당초 토지 취득시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함께 과세되고, 소유권이전고시 시점에는 조합원용과 비조합원용 토지가 확정될 뿐 대지권 변동이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별도로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과 같이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부지 중 조합원이 신탁한 토지와 조합이 금전신탁받아 취득한 토지가 혼재되어 있다면 동 조합이 소유권이전고시 익일에 취득하는 비조합원용에 대한 취득세는 비조합원분 전체토지(12,000㎡)에서 토지신탁분(46,256㎡)과 금전신탁분(1,308㎡) 토지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11,865㎡)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운영과-1659, 2010. 4. 23.】

18. 주거용 고시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Q 질의내용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완비 등) 주거용 고시원*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등록세 감면되는지 여부



※ 주거용 고시원이란 : 고시원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사용승인 후 무단 용도 변경하여 독립된 주거시설(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을 완비하여 주택임대방식(보증금, 월세형식 등)으로 사용되는 고시원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3조제4호〈별표1, 제4호 파목〉에서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업원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주거용 고시원을 취득·등록세 주택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거용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주거용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시원을 무단으로 독립된 주거시설(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을 갖추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등록세 과세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감심2007-140, '07.10.15 참조),

라. 아울러 건축 관련 규정 등에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이 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등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판97누7936, '97.11.14 참조)

마. 따라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등록세 감면대상을 취득·등록세 주택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취득·등록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주거용 고시원은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673, 2010. 4. 25.】

19. 종교단체 취득 아파트의 취득세 등 비과세 여부

Q 질의내용

불교의 포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남 보령시에 소재하는 재단법인이 도심지 포교를 목적으로 서울 연락사무소 겸 불교경전을 해설하는 연구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종교목적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호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대법원 2001.12.14. 선고 2001두5101 판결 등 참조),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6.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 귀문 유지재단이 증여로 취득할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도록 건축된 주거용 아파트인 점, 불상을 모시거나 목탁을 치는 등 불교의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포교를 위한 원고 집필 등을 포교행위로 볼 수 없는 점, 포교정책연구나 포교세미나는 직접적인 종교활동이라기 보다는 연구활동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문 아파트의 경우 종교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인 종교의식·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672, 2010. 4. 25.】

20.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Q 질의내용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00리조트 스키장 등록(1990.12.20)

- 총부지면적: 1,919,842㎡

- 스키장 부대시설: 5종(잔디스키 1개소, 잔디썰매 1, 산악자전거1, pitch & putt 골프연습장 9홀, Fitness Course 1식)신고
- 스키장 중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개장(2009.7.4)
 - 체육시설법에 따른 골프연습장(그린벨리파3골프연습장)
 - 골프연습장 면적: 1,919,842㎡ 중 20,200㎡
 - ※ 1필지에 스키장과 골프연습장이 있고, 필지분할 안함
 - 공사내용 : 잔디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 공사 등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원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에 관한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에서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2010.4.20),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클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 지목변경에 따른



질의회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00, 2010. 4. 26.】

21. 미준공 건축물 구매취득 시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 등

Q 질의내용 1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구매취득 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Q 질의내용 2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 사실관계 ||

○ 건축물 현황

- (주)00주택 부도, 공사 진행률(97%) 사실상 공사중단('08.초)
- 00주택보증 가처분신청 소유권보존등기('08.7.)
- 00주택보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 ('10.2)

○ 토지 현황

- 신탁등기: 위탁자 (주)00주택/ 수탁자 00주택보증('05.12.)
- 지목변경 신청 : 00주택보증('08.4)
- ⇒ A법인이 위 토지 및 미준공 건축물을 구매취득('10.2)

A 회신내용 1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

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A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된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공매 취득한 경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므로(지방세운영과-1231, 2010.3.24 참조), 공매 취득가액에서 미준공 건축물에 해당하는 가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A 회신내용 2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A법인이 미준공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공매 받은 후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한 후 사용승인 받는다면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의 소유자인 A법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01, 2010. 4. 26.】

22. 자경농민 일시·계절적 휴경지 취득시 감면 여부

Q 질의내용

자경농민이 취득(등기) 당시 일시적·계절적 휴경지(공부상 농지)를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의 농지로 보아 감면 해당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登記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구·시·군 및 그 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하며 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일 것, 제2호에서 취득자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소재지 구·시·군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제3호에서 소유농지 및 임야(도시지역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의 규모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합하여 전·답·과수원을 3만 제곱미터(「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의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일시·계절적인 휴경지를 사실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사실상 지목의 결정은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판1985

누234, '85.9.10. 참조), 그 토지의 위치·형상 등이 언제든지 경작가능한 상태의 일시적·계절적 휴경지 상태라고 한다면 비록 취득(등기) 당시 경작 중인 농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므로,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고 사실상 현황이 일시·계절적인 휴경지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등록세 50% 감면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54, 2010. 4. 28.】

23. 납세자와세정보가 그의 채권자에게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Q 질의내용

지방세 과징목적으로 취득한 과세기관의 과세정보자료는 납세자 본인이 자신의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방세법 제6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금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납세자(A)의 과세정보자료를 사적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공개요구시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A 회신내용

① 지방세법상 과세정보 제공문제

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자료에 대하여는 본인의 과세정보자료를 요구하거나 국가 등이 과징목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공목적외에 사적인 자료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세무공무원에게 비밀준수·누설금지 의무를 법률(지방세법 제69조)에서 명시규정하고 있어, 납세자 본인관련 과세자료를 본인



이 요구하거나 국가 등이 과징목적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률근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하지만, 본인인 납세자와의 이해관계나 사적관계에 있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제3자가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자료를 요구한다 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자료에 대한 비밀준수의 예외규정으로 과세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 바, 본 규정의 취지를 예시를 들어 살펴 보면, 보험료 산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특정 납세자(A)의 과세정보자료를 그 특정 납세자(A)와 이해관계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한다 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자료의 제공) ①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를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과세자료 제공문제

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이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전반적 포괄적 정보에 대하여는 특정인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불특정다수인인 국민들이 공개를 요구할 때는 불특정다수인한테 공개한다는 의미지, 특정인의 정보를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권관계에 있는 특정인한테 제공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라 사료되고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본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동조단서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의 여지로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명백히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공개가능토록 규정하여 특정인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되거나 특정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침해금지) 및 제37조제2항(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

할 수 있지만 본질적 자유와 권리 침해금지)조항과의 충돌 내지는 범위 일탈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정인의 과세정보를 이해관계가 있거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시 공개대상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①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에서 과세정보는 비밀유지·누설금지의무가 적용되는 비공개정보이고 예외적으로 납세자 자신의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 기관들이 공공목적으로 법령근거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가능하지만, 특정 납세자(A)의 과세정보는 그 특정 납세자(A)와 이해관계나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채권자)가 요구시 제공할 수 없는 것이어서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임
- ② 지방세법 제6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보험료 산출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제1항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는 의미이지 달리 해석될 여지도 없는 것임
- ③ 또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다른법률(지방세법 제69조제1항)에서 비밀(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정보”에 명시 해당되어 달리 볼 여지가 없는 것임
- ④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본문에서 특정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어 동호 단서의 적용여지가 없음에도, 동호단서다목에서 “공개함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규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는 점”만 집착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6호 본문에 정면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법논리상 허용될 수 없는 당연무효의 해석이라 할 것임

③ 종합 검토의견

가. 특정 납세자의 개별적 과세정보는 헌법상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의무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본인의 정보를 요구한다든가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는 비밀준수정보 내지는



질의회신

비공개대상정보이어서 다른 법률(지방세법 제69조)에서 명시 비공개정보로 규정하는 정보에 해당됨은 물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보더라도 그 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불부합되고 동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명시 해당될지 언정 동호단서다목만의 획일적 적용대상이 될 여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납세자의 과세정보는 그와 사적 채권관계에 있는 제3자가 요구한다 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달리 볼 여지가 없다고 사료됨.

【지방세운영과-1778, 2010. 4. 29.】

24.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Q 질의내용

장애인이 부친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기 받아오던 자동차세의 감면을 포기하거나, 공동 등록한 세대를 분리하여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면, 새로이 장애인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라 함은 “취득세 · 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차량을 취득하면서 취 · 등록세를 감면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면, 이를 최초로 감면 신청한 1대라고 할 것인 바, 감면포기나 세대분가를 통하여 기존 차량이 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그 지위나 순위까지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취득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하지 않은 한, 새로이 취득하여 감면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77, 2010. 4. 29.】

25.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Q 질의내용

매매계약의 약정에 따라 산업용건축물을 먼저 신축하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의 취득으로 보아 감면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



질의회신

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 건의 경우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자가 취득한 공장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판2008두3319, '08.5.29 참조) 산업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공장용지 매수계약 약정에 따라 산업용건축물 신축부지(공장용지) 매도자로부터 산업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산업용건축물을 신축 후 그 산업용건축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를 매수한 경우라면 이미 당해 산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지) 취득시점에는 산업용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당해 산업용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가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85, 2010. 4. 29.】

26. 자경농민의 농지(목장용지) 해당 여부

Q 질의내용

자경농민이 축사로 사용되고 있는 축사 부속토지(공부상 지목 : 전)를 취득(등기)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261조 감면대상 해당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제2호에서 목장용지란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19조제1항에서 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를 목장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하여 「농지법」 등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목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목장용지)의 지방세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목장용지를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축사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가 아니라면 취득·등록세 감면대상 목장용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률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할 수 없으므로(대판2008두15350, '09.12.24 등 참조) 지방세법 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이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의 부속토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속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전인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지방세운영과-1791, 2010. 4. 29.】 